

판매와 공급에 대한 기본 약관

1. 해서

- 1.1 판매와 공급에 관한 본 규정들과 조인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조건’):
 - “매수인”이란 어떠한 주문이나 재주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14조나 서비스표를 주문하는 사람, 회사 또는 기업을 말한다.
 - “조건”이란 합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매도된 변질될 수 있는 판매와 공급에 관한 본 규정들과 조인들을 말한다.
 - “계약”이란 합은 매수인이 공급자의 재물을 구매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주문을 제출하고 공급자가 서면으로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합의를 말한다. 서비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명시한 당사자들이 재주문을 통하여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그러한 계약은 본 규정들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 “재물”이라 함은 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매수인에게 공급하기로 약속한 물품을 의미하며,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도 이에 포함된다.
 - “재견서”라 함은 공급자가 매수인에게 제공할 서비스를 설명하는 문서로서, 양 당사자가 서명을 하고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문서를 의미한다.
 - “서비스”라 함은 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매수인에게 또는 매수인을 위하여 제공하기로 한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말하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재견서에 설명되어 있다.
 - “공급자”는 Spectra Korea Ltd 와 모든 전자과 재견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열사이다.

- 2.1 **관연의 기초:** 본 조항들은 매수인의 주문서, 또는 주문서에 첨부된 문서에서 나타나지 않는 조항이나 조인들을 항상 우선한다. 매수인의 주문서에 나타나지 않는 조항들 중 본 조항들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규정된 바와 다른 것이 있으면, 그러한 조항이나 조인들은 공급자가 재견서로 명시적으로 수락하지 않는 이상 계약의 내용을 이루지 못 한다. 매수인이 공급자가 공급한 재물이나 재물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공 받은 사실, 또는 이에 관한 송장에 따라 제공을 지할만 사실은 본 조항들의 적용을 받기로 한 의사표시로 본다. 공급자가 매수인의 의사표시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조항도 매수인에게 이익을 제기하지 못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본 규정들의 적용을 받기로 포기하거나 그러한 매수인의 조건을 받아들일기로 한 것으로 본다.

3. **전적:** 전적으로 언급하는 가격, 설명, 그리고 배달 날짜를 단순한 정보로서의 가능한 가지며, 공급자가 매수인의 주문을 받아들이고도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하위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공급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공급자에게 60 일 이내에 주문을 하지 않았던 사실로도.

4. **주문:** 매수인은 공급자에게 주문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규정들의 적용을 받을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모든 주문은 가격, 불량 그리고 상조 합의를 승부 날짜를 명시하여야 하고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할 약속된다. 공급자의 전적에 대한 담보로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물론이고, 어떠한 주문서나 서면으로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는 공급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5. **가격과 공급:** 재물의 가격은 공급자가 매수인에게 통한 가이며, 서비스의 요금은 재견서에서 합의된 것이다. 재물이나 서비스의 경우 모두 양 당사자들이 원인으로 다른 가이나나 요구하는 경우, 가이나나 요구하는 제품, 운송비, 보험, 수수료 관세 또는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제품은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할 수 있는 한정 범위, 부가세, 사용 또는 소프트웨어 포함여 이 있지 않으며, 공급자의 재량에 따라 상용과가 서비스 제공으로 포함되거나 또는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सेवा와 제품은 서면으로 말리 합의하지 않은 이상 매수인은 공급자가 배속, 포장, 보험, 그리고 수입 또는 수출 하기를 받기 위하여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6. 발송과 배달

- 6.1 공급자는 매수인의 주소 또는 당사자에 의해 합의에 의하여 인코텀2000에서 명시한 인도조건으로 한다. 공급자가 인용한 모든 배달 날짜는 대략적인 것일 뿐이며 배송의 지연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공급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배달의 시간은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는다.

- 6.2 공급자는 재물을 발송하여 배달할 권리를 보유하고, 본항에서 배상을 이행할 각각의 재물에 대하여 개별적인 송장을 발행할 수 있다. 본항이 본항이하 이루어지거나 하거나 공급자가 본항에서 배상을 할 권리를 행사한 경우, 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우에 본항에서 배상되었거나 할 본항의 배달이 어떠한 이유로 지체되었을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계약 조항과 무관하게 주문을 수행할 수는 있다.

7. **취항부터 대수송의 이전:** 재물, 대량 배운 재물, 또는 혁신에 대한 취항 무담은 제 6 조에 규정된 배달의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서류, 샘플, 모델, 또는 잘못된 배관을 받은 청구는 운반비에 대하여 책임수이하여 하며 배상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10 일 이내에 공급자에 대해 제기된 의사표시가 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물을 최종적으로 검사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이러한 재물의 수량은 공급자가 제 11 조의 의뢰에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8. 서비스:

- 8.1 공급자는 본 규정과 관련 재견서의 조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8.2 매수인은 공급자의 합당한 요구에 대해, 또는 달리 합의된 경우에 있어서 공급자에게 각 그 관련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재견된 정보와 자료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지게 되고, 이러한 정보나 자료를 계속하여 공급자가 서비스 제공을 함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9. 합의의 조건:

- 9.1 재물의 송부는 각각 모든 하나의 거래를 구성할 것이고 매수인은 배달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송장을 받게 될 것이다. 서비스에 관하여는 공급자가 매수리 때 미리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금 지급의 기한은 송장이 발부된 날짜 이후 30 일이다.
- 9.2 계약에 따라 청구되는 모든 금액은 매수인이 어떠한 공제, 보류, 상회 또는 상계의 청구 없이 지불하여야 하며, 이러한 공제, 보류, 상회 또는 상계의 사항은 그것이 법에 의하여 요구되지 않는 이상 계약에서 비롯된 것인데, 불법행위에 기한한 것인데, 법정 의무에 위반한 것이든 공금이다.

- 9.3 공급자는 독자적인 재량권의 행사로서 어떤 한 시점에 매수인의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담보의 회피로서 매수인이 공급자에게 대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 9.4 단일 매수인이 반제기에 대금의 결제할 수 못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그에게 허락되는 다른 권하고 다른 방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다음 중의 하나의 행위를 할지라도) 매수인이 계약 해제할 것으로 보고 재물의 추가적인 송장을 지면 또는 취소하고 그 계약 또는 다른 어떠한 계약에 따라 서비스의 추가적인 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i) 계약을 승인하고 매수인에게 송금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ii) 대금의 결제에 대하여 결제되지 않은 대금에 대하여 신용한 평가액의 1%보다 4% 인 신용 이자(한월이 내리까지) 전과 모두 의무를 결제의 결제를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자는 매일 정산하여야 한다.

10. 재물:

- 10.1 공급자는 재물의 성능에 부합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물의 상황에 대하여 수정을 가할 수 있다. 모든 공급자는 정부 부문의 의뢰로 설정된 규정이 우선적인 이 사항에 의하여, 또는 특정 물질의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인하여 속도가 될까한 물질들을 대신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 10.2 공급자의 카탈로그, 제품 및 개표, 광고자료, 판매 자료 또는 문헌이 제공하는 재물의 설명이나 기타 모든 대금의 설명이나 대략적인 내용일 뿐이며, 매수인에게 대략적인 정보나 지침을 제공할 뿐이다. 이러한 정보는 공급자에 의한 보증 또는 representations 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계약의 일부가 되지도 않는다.

11. 보증:

- 11.1 공급자는 재물이 매수인에게 배달된 날로부터 1 년 동안은 재물이나 가공상의 문제가 없을 것을 보증하며, 재물의 운항제 13조에서 규정이 방해 될까나 오류가 없을 것을 보증하여야 하며, 모든 작동 오류들이 수정될 때까지 고 보충하지도 않는다. 매수인이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과, 그러한 사용법이 법률에 따른 사용법이라는 것에 관하여는 매수인의 책임이다.

- 11.2 공급자는 재견서에 따른 서비스표합영 동의서의 약속을 기여어 수행할 것을 보증한다.

- 11.3 매수인이 공급자에게 제공이 있다는 사실을 즉시 서면으로서 주장하고, 그러한 재물이 매수인의 취항무담으로서 또는 보증에 따라 지급되고 배달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공급자에게 환수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검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내에 그러한 재물이 제조나 가공에 있어 하자 있다고 판단하면 공급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재물을 보수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여 배송료를 미리 지불하여 매수인에게 재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 11.4 공급자는 그러한 재물을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 받는다. 그러한 재물의 보수나 교체는 보증의 기간을 연장시키지 아니한다. 이 보증의 기한은 1 년으로 제한되며, 이 기간은 오류라고 주장되는 하자들만을 수 있을 것이었거나 배달의 시점에 이미 잠재하고 있었다고 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 11.5 서비스 표 제 11 조 2항에 부합하지 않고 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그리고 서비스의 제공이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 공급자가 그러한 서비스가 위 규정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에 동의를 한다. 해당 서비스는 공급자가 11 조 3항에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로 대체 또는 상회 할지라도 다시 서비스표를 제공할 수 있을 때 대체 이다 다시 제공되어야 한다. 만약 공급자가 서비스의 불합리한 이행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문헌의 서비스에 관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11.6 다음의 경우에 공급자가 재주문을 대한 보증의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i) 매수인이 제 11 조 3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통행률 인하여 그러한 재물을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 (ii) 하자이고 동등이 매수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일 때, (iii) 하자고 매수인이 제공받은 재도, 샘플 또는 가공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매수인이 제공한 자료 또는 다른 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타 공급자가 합리적인 재량권 하에 채택한 아닌 다른 물로로 불합치 하자 발생하였 때, (iv) 하자고 제작 여의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이 때 그 사정이 사, 오류,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용, 관리, 개조, 부적절한 설치, 부적절한 운항, 부적절한 시험 등인지는 불지 않는다, (v) 하자고 재물을 공급자가 미리 제공하지 아니한 다른 재물이나 물질과 같이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 (vi) 하자고 고장 등이 매수인이 제물이나 서비스에 대한 하자가 되지 않은 쟁거나 수정을 가하거나, 제물이나 서비스에 관하여 공급자가 서면으로 제공한 설명에 부합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일 때, 그리고 (vii) 하자고 고장이 매수인이나 그에게 본 계약서에 따라 부과되는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

- 11.7 매수인이 제물이나 다른 사장에 의하여 지물하여야 할 어떠한 금액의 어떠한 비율이라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절의 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보증과 구제 방법 등은 공급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료될 수 있다.

- 11.8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은 특정적이고 넓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모든 명시적, 묵시적이고 보증, 조건과 규정을 대신하는 것이며, 이러한 특정 목적을 위한 재물의 목적보증 또는 차질상 보증 모두 포함된다. 본 절(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보증의 위반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지는 유일한 손해와 매수인에게 허용되는 유일한 구제 방법 등은 제 1 조 3항과 제 11 조 5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뿐만은.

12. 책임:

- 12.1 (i) 사(가), (ii) 공급자의 과실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 (iii) 공급자의 동의 또는 종중실 또는 (iv) 매수인 이유에서 비롯되거나 연결될 수 있는 다른 모든 책임에 관해서는 본 계약 조항 이외에 대금과 공급자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2.2 공급자는 그의 과실로 인한 사(가) 또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매수인의 물질적 재산에 대하여 일한 손해에 관해서는 매수인에게 공급자에게 책임을 지는 조항을 명확하게 하지 위하여 어떠한 형태의 훼손, 손실 또는 손상을 물질적재산에 대한 손해가 아니다.

- 12.3 제 12 조 1항과 2항에 따라, 재물에 관하여는 공급자가 계약에 따라 행한 재물의 제공, 불완전한 제공, 또는 재물 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공급자의 책임은 그것이 계약의 의도 또는 의지, 불법행위(과실 포함)로 발생하였는 지에 관계 없이 발생한 것인데, 또는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인데 간에 해당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지불하여야 할 총 금액의 125%를 넘지 못 한다.

- 12.4 제 12 조 1항과 2항에 따라, 서비스에 관하여는 공급자가 계약에 따라 행한 서비스의 제공, 불완전한 제공, 또는 재물 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공급자의 총책임은 그것이 계약의 위반에 관한 것인데, 불법행위(과실 포함)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또는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인데 간에 해당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지불하여야 할 총 금액의 125%를 넘지 못 한다.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관하여는 어떠한 한해에도 그 해에 매수인이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의 125%를 넘지 못 한다.

- 12.5 제 12 조 1항에 따라, 공급자는 그것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지 간에 매수인에 대하여 이득의 손실, 수입의 손실, 사용의 손실, 영업영역의 손실, 세입의 손실 또는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발생한 간접적이거나 다대적인 손해에 관해서는, 그 손해가 예측 가능하였는 지 여부, 당사자가 예상하였는 지 여부, 불법행위(과실 포함)로 발생하였는 지 계약 위반으로 발생하였는지, 다른 사유으로 발생하였는지를 물론하고 공급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 12.6 계약에 의하여,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권은 그 인인이 되는 (i) 재물이 배달된 날 또는 (ii) 서비스가 제공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급자에 대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공급자는 이 기한 이후에 행사된 청구권에 대해, 또는 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3. **소프트웨어:** 공급자는 재물과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소프트웨어, 펌웨어, 프로그래밍 킷, 그러한 소프트웨어 관련 문서, 그리고 매수인이 제작한 모든 복제품(이를 전부 포함하여 ‘소프트웨어라 칭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소유권을 항상 보유하고, 매수인에게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배타적이지 않고 양도 불가능한 권한을 부여한다.

14. 지적재산권:

- 14.1 어떠한 재물도 인도는든 소유권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조건이나 다른 어떠한 계약의 조항도 매수인에게 어떤 재물이나 서비스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양도, 인전 또는 부여하는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며, 이에 관하여는 본 계약 조건제 13 조와 제 14 조 3항이 적용된다.
- 14.2 매수인은 공급자가 서비스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작업’이란 단어에 대해, 제작, 사용, 또는 개발된 모든 제작물과 인도 가능한 실제적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저작권, 그리고 지적 재산권을 세계 어디에서든 제3자에게 이양, 양도, 판매, 임대하거나 귀속하고 공급자가 계속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이러한 권리는 서비스, 문서, 자료, 그림, 설계서, 물건, 스케치, 보고서, 발명품, 프로그램, 수장, 설계, 도구, 소프트웨어 다른 모든 관련된 물품에 관한 권리의 회유권자가 포함된다. 매수인은 본 계약 조건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외에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권권,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가 가지지 못 한다.

- 14.3 공급자는 매수인이 서비스의 목적된 이득을 사용하고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매수인이 그러한 ‘작업’을 필요한 정도로 사용할 수 있게 배타적이지 않고, 양도 불가능한 권한을 매수인에게 부여한다.

- 14.4 단일 매수인에 대하여 제물이나 서비스가 한쪽에 존재하고 있는 제 3자의 특허, 저작권 또는 다른 권리를 획득하는 소송이 제기되면, 공급자는 매수인 그 청구에 의하여 배상하게 되거나, 그 소송에 관여할 필요가 위하여 지불하였거나 지불하기로 약속한 모든 손해와 비용을 배상한다. 이러한 다층의 사항들이 존재 조건이 된다: (i) 그러한 소송과 관련된 모든 절차와 협상을 공급자가 관장되 지배한다; (ii) 매수인이 그러한 절차나 협상에 필요한 도움을 성실하게 제공한다; (iii) 확정적인 배상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면 매수인은 그러한 배상금의 수령을 보장하거나 배상을 하여야 하는 한도, 공급자의 승낙 없이도 그러한 절차들 중로 시키는 안 된다; (iv) 매수인은 존재되는 권리의 청태 등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보험이나 담보 등을 혁신 시킬 필요를 하여서는 안 되고, 그러한 보험이나 담보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기로 동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보험이나 담보를 통하여 매수인이 회복할 금액에 대하여는 본 조항에 따른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v) 존재하는 소송에 관하여 다른 당사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거나 매수인 소송의 의하여 매수인인 이러한 용의를 부여하여야는 안 된다; 매수인에게 배상을 하기로 동의한 손해나 비용의 배상은 공급자에게 귀속하고 매수인은 모든 공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vi) 공급자는 매수인에게 본 조항 제 14 조 4항의 의하여 공급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 비용 또는 지출을 최소화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조처에는 (승급자의 선에서 타당한) 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적인, 또는 개편된 자문으로부터 제공받을 것이 포함될 수 있다.

- 14.5 다음의 사유들로부터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였는 공급자에게 제 14 조 4항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i) 문제의 재물은 서비스로 인하여 공급자가 직접 행하였거나 서면으로 허락하지 않은 첩보나 수정이 이루어진 사항; (ii) 모든 명세 또는 설명서 등을 포함하여 매수인도 공급자에게 제공한 정보; (iii) 공급자 재물에 필요한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거나, 매수인의 요구나 설명 등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iv) 공급자가 제작하거나 개조하지 않은 장비와의 결합 또는 그러한 장비와의 추가; 또는 (v) 공급자가 미리 설정한 범위나 서면으로 승인한 범위를 넘어서는 사용.

- 14.6 본 조항, 제 14 조는 제 12 조 1항을 배척하지 않으면서, 어떠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 3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관한 공급자의 책임의 진화와 매수인의 유일한 구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제 14 조 제 12 조 3항, 제 12 조 4항, 그리고 제 12 조 5항에 규정된 책임의 한계의 적용을 받는다.

- 14.7 **불법행위:** 본 계약 조건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공급자는 그의 지배 하에 있지 않은 이윤나 사정으로 인하여 제물이나 서비스로 제공된 방지, 지원 또는 그 경제적인 가치가 떨어진 모든 경우에 매수인에게 발생한 간접적인 손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만약 그러한 불법행위 사건이나 사건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모든 계약에 대하여 배상 할 필요를 확실히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그의 독자적인 재량권의 행사로서 날은 재고를 그의 고객들 사이에 임의로 분할할 수 있다.

- 14.8 **기밀정보:** 양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알게 된 기밀 정보나 공개된 지식이 되거나(본 조항의 위반 의뢰 권으로) 관한 정보는 기밀의 명칭에 의하여 공개되거나 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기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지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타방 당사자에게 송하, 연가, 기타로 계약의 조항에 3자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15. 취소, 연기와 계약의 종료:

- 15.1 공급자가 수락한 재물 주문은 공급자가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는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통지의 없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만 매수인이 취소하거나 연기할 또는 중재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취소되거나 수정된 주문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으로 고려하여 매수인에게 배상을 하여야 하고, 그러한 주문의 취소나 연기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 손해 비용, 요금과 모든 지출을 부담하여야 한다.

- 15.2 서비스에 대한 계약은 관련 재견서에서 명시한 시점 날짜에 시작되어야 하고, 제 17 조 3항과 제 17 조 4항에 따라 조기 종료되지 않는 이상은 첫 재견서에 처음 명시된 기간 동안 유지되고, 갱신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하며, 그 이외에는 어느 한 당사자가 제 17 조 3항에서 제 17 조 4항에 따라 계약을 종료 시키기 전까지는 그 기간을 연장할 일이 계속 유지된다.
- 15.3 양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90 일 이전에 종료의 통지제 함으로서 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고, 이에 제 17 조 3항의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15.4 서비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수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계약 위반을 저지르거나, 수정을 요구하는 통지서 서면으로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 위반을 수정하지 아니하면 타방 당사자는 계약 위반을 담당할 당사자로 통지하고, 수정을 하고 나서 매수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15.5 서비스 계약의 종료된 경우에 각 당사자는 본 계약 조건에 따라 하위절차나 본 계약 조항에 따른 권리를 의무를 행사하기 위하여 그러한 재물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상대방의 재산 또는 그가 다른 매수인이나 제물들 상대방에게 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재산의 사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만 된다.

- 15.6 본 조항들에 의한 계약의 종료는 종료 날짜에 이미 양 당사자에 대한 모든 통지나 책임이 이행되었는지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 15.7 매수인의 지불불능: 망할, (i) 매수인이 지불불능의 상태가 되거나, 그의 자산의 일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임할된 재산 관리인, administrative 재산 관리인, 또는 관리인이 연기나, 그의 채권자들과 타협이나 협의를 하거나, 재산을 청산하거나, 그의 채권자들과 협의를 하는 영장이 발행되거나(지나치게) 통발을 갖기 위한 협정이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청산(복합채 재), 적용 가능한 다른 법적 절차에 따른 유사한 행위로 인정되었을 때 또는 (ii) 매수인이 영장을 제시하거나 중지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매수인에게 배상을 제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배상을 위한 책임도 지는 일이 없이 다른 이상에 제물이나 서비스 공급을 중지할 수 있고, 재금지되었거나 결제되지 않은 서비스로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를 금액이나 요금 이전에 이루어진 할애, 청산과 다른 내역이 있었으며 불구하고 즉시 반제에 있게 되거나 청구 가능하며, 본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는 본 계약 조항에 의하여 공급자에게 발생되는 다른 어떤 권리나 구제 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 기타:

- 19.1 본 계약 조건과 다른 모든 계약은 한국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본 계약 조건과 다른 모든 계약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분쟁적 청구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중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재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절차를 시작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전달함으로써 시작된다(‘시작통지’). 중재자 시작되면 양 당사자는 성실하게 중재에 일한다. 양 당사자 널리 정한 바가 없으면 중재자인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 조건이나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본지 중재자를 통하여 해결하거나 노력할 위하여 하고 중재 절차가 종료되거나 한 당사자가 중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본 계약 조건이나 다른 계약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이나 청구의 해결을 대한민국 법원의 배타적인 관할에 맡기기로 동의하고 이러한 통지는 취소할 수 없으나, 공급자는 매수인에 소송을 관할된 이는 법원 어디에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본 19 조 1항에 규정된 대금 내용도 각 당사자가 배타적인 금지명령을 받거나, 기타 다른 자정적인 법적 구제를 받을 것임을 목적으로 법원에 의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9.2 매수인은 본 계약 조건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것을 그러한 권한의 포기로서 보아서 여야 되며, 이후에 이러한 권리의 행사나 집행은 취소될 수 있다.

- 19.3 **관할 및 재판의 조건:** 조항이나 조항의 일부가 관할 있는 법원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집행 불능이라고 판단되면 그러한 후속 또는 집행 불가능의 결정은 본 조항의 효력이나 집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9.4 본 계약의 사내 서면으로 공급자가 송금을 하지 않으면 본 계약 조건에 따른 그의 권리를 양도, 이전, 갱신 또는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본 계약 조건에 따른 그의 의무를 다른 이로 하여금 대리하게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19.5 본 계약 조항과 관련 계약이 행한 사안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와 이의의 진술을 구성하며, 그 이전에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 이해 또는 편의를 대신하며, 이 때 이해 또는 편의가 구두로 이루어졌는 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 지를 이를 증명할 수 없다. 해당 계약에 대한 사실들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이전에 하위인 말이나 쓰인 글로만하는 어떠한 의사표시, 약속 또는 보증을 할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공급자에 대하여 그러한 통찰을 신중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관해서는 매수인에게는 어떠한 구제 방법도 인정되지 않으며(그리고) 매수인이 사기 행위로서 이루어졌거나 공급자가 그의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 관해서는 배타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루어진 경우를 예외,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구제 방법들은 본 계약 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위반에 대한 것 뿐이다. 본 조항이 사항에 관한 허위 의사표시는 제 12 조의 적용을 받는다.

- 19.6 계약에 대한 수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양 당사자의 본질적인 권한이 침해되는 대조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 본 계약 조건과 상충하는 모든 통지는 간적으로 인하여는 각 당사자의 주소나 수정된 날짜를 당사자가 그러한 통지서 때때로 지칭할 수 있는 주소 발송하여야 한다.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졌으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직접 전택하였으면 통지 시에, 유선으로 발송하였으면 발송 후 2일이 후, 팩스로 보낸 경우에는 전송 확인 시에 효력을 발하는 것으로 본다.